

공학교육혁신센터규정

제1조(명칭) 이 센터는 동아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공학혁신관련 사업과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제반 교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학교육혁신연구
2. 공학교육인증지원연구
3. 산업수요기반교육연구
4. 창의적설계교육연구
5. 국제화교육연구
6. 공학교육인증지원전산시스템개발
7.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

제4조(직제)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직제를 둔다.

1.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
2. 운영위원회
3. 프로그램위원장위원회
4. DASS관리위원회

제5조(임원의 임무 및 임명) ①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소장은 공과대학장과 협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되,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으로 보한다.

제6조(인력) ① 센터에 전임교원, 직원, 전임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전임교원은 연구전담 전임교원으로 「연구전담 전임교원 인사 규정」에 의한다.

③ 전임연구원의 임용은 「전임연구원 임용에 관한 내규」에 의한다.

④ 조교의 임용은 「조교임용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부학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며,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제8조(프로그램위원장위원회) ① 공학교육인증 및 공학교육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각 프로그램별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위원장위원회를 둔다.

② 프로그램위원장위원회의 위원은 소장, 각 프로그램(인증프로그램 및 혁신사업 참여전공)의 프로그램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③ 프로그램위원장위원 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장 또는 재적 프로그램위원장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소집하며,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④ 프로그램위원장위원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일부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전에 한하여 소장을 포함한 관련 프로그램위원장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

있다.

제9조(DASS관리위원회)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각 프로그램별 공학교육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자료의 점검 및 보완사항 관리 등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DASS(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)관리위원회를 둔다.

제10조(예산 및 결산)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사업보고) 센터의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